



연 수 구 보 건 소



수신 관내 의료기관의장 귀하

(경유)

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3(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, 응급구조사는 **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**, 미신고 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이에, **2022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**, 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응급구조사가 자격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2022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 전 신고 안내

- (신고대상) 2019년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
- (행정처분) '23. 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쳐 '23년. 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

※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대상자 확정 전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 제외 예정

나. 2023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안내

- (신고대상) 2020년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
- (신고기간) 2023. 12. 31. 까지 신고
- (신고방법) [붙임] 참조 *2023년도 개정판 9월 중순 배포 예정

붙임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. 끝.

